

구상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중앙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가소○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
원고	◇◇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6. 8. 31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야외체험학습 중이던 ○○초등학교 학생 ■■■은 2015. 2. 4. 12시 35분 경 △△△△△△△에서 슬로프 중간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제설 작업 중이던 고정삼에 입술 부위를 찍혀 상해를 입음 - △△△△△△△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△△△△△△△와 ■■■가 합의한 치료비 및 위자료 5,670,944원 중 자기부담금 300,000원을 공제한 5,370,944원을 ■■■의 모 ▲▲▲에게 지급함 - 이 사고가 △△△△△△△와 인솔교사 등의 보호·감독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, 인솔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제기 -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 청구 기각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는 원고에게 3,759,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2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		